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이 수 철

나.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읍·면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읍·면장이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으로서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기존의 별정직 읍·면장도 포함시킴 (안 제2조 제1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농기계교관,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진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조 제3항)
-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운영 (안 부칙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 병 향)

- 동조례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97-61 |
|----------|-------|

제출일자 : 1997. 5. 2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읍·면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읍·면장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으로서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기존의 별정직 읍·면장도 포함시킴
(안 제2조 제1항)
- 동 조례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농기계교관,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진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조 제3항)
-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운영 (부칙 안 제2항)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② (생략)</p> <p>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p> | <p>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녀상담원 2. 아동복지지도원 3. 농기계교관 4. 사회복지전문요원 5. 보건진료원 |
| <p>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 <p>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 </p> |
| <p>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p> | <p>제9조 (당연퇴직) 각호의 1</p>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조 (휴직)</p> <p>1. (생략)</p> <p>2. 형사사건으로 <u>기소된때</u> (약식 명령 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p> | <p>제11조 (당연퇴직)</p> <p><u>각호의 1</u></p> <p>.</p> <p>.</p> |
| <p>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 용)</p> <p>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p> | <p>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 용)</p> <p>.</p> <p>.</p> <p>.</p> |